

CONTACT



변호사 정환

T: 02.772.4940
E: hwan.jeong@leeko.com

변호사 선정호

T: 02.772.4676
E: jeongho.sun@leeko.com

변호사 가장현

T: 02.772.5911
E: janghyun.ka@leeko.com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 ESG 관련 특칙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안과 공정화지침 개정안에서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은 부당한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최근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시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등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 규제가 강화되며, 기업들이 해외시장 영업을 위해 자회사 및 협력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까지 실사 등을 통해 관리할 필요를 고려한 것입니다.

심사지침 및 공정화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개정

최근 해외 ESG 규제가 강화되며 해외시장 영업을 위해 기업들이 ESG 규제 위반 여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거래상대방에게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단순히 일회성 거래라는 이유로 거래상 지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1누60719 판결(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각))를 반영하여 일회성 거래에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 사항	개정 내용
‘경영간섭’ ESG 규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등 국내·외 수출 관계법령의 목적 달성, 글로벌 공급망 ESG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거래상 지위 인정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거래상지위 인정의 독자적 기준이 아니라 종합적인 고려사항 중 하나로 규정함 즉, 일회성 거래라 하더라도 일방이 그 거래관계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음

■ **사업활동방해 관련 개정**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탈취 분쟁에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출액 변동성이 큰 스타트업에 대한 사업활동방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성립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활동 곤란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공정거래법 시행령과의 규율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개정 사항	개정 내용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판단기준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활동방해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 중 '사업활동의 상당한 곤란 여부'를 심사할 때, 사업 초기 등 사업 여건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업특성상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경우에는 매출액 또는 거래상대방의 감소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활동 곤란의 정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의 부당이용과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

■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개정**

공정위는 최근 제약사가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특허소송 사실을 영업에 활용한 것이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1누40470 판결(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각)]에 근거하여 이를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의 예시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사항	개정 내용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예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 이유 없이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범위만에 해당될 수 있음

2.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관련 개정**

공정위는 앞서의 심사지침 개정과 동일하게 원사업자가 불가피하게 협력업체에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최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정 사항	개정 내용
부당한 경영간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사업자가 ESG 관계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연동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

3. 시사점

이번 심사지침 및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최근 법원의 판단을 적극 수용하고, 기업들이 겪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심사지침 및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통하여 ESG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 요구에 대한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ESG 규제 준수에 필요한 정보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한편, 거래상 지위남용의 성립요건인 "거래상 지위"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은 계속적 거래에서의 매출 의존도를 중요 기준으로 제시하였는데, 심사지침 개정안은 계속적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거래상 지위 남용을 통한 규제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02.772.4000 | mail@leeko.com | www.leeko.com